

함양휴게소 직거래 장터 설치·운영 표준협약서

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(이하 “한국도로공사”라 한다)와 함양군은 다음과 같이 함양휴게소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【협약의 목적】

본 협약은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함양휴게소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협약기간 및 운영시간】

- ① 협약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.
- ② 협약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1년을 초과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신규 협약을 체결한다.
- ③ 영업시간은 매주 토·일요일 10시부터 5시까지로 하며 상호협의를 통해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3 조 【시설물의 설치】

- ① 직거래장터 면적은 최대 30㎡이내로 한다. 단, 다수의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30㎡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함양군이 부담하며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. 단, 전기, 수도료 등 경상경비는 함양군이 부담한다.
- ③ 함양군은 한국도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몽골텐트, 판매대 등의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.

제 4 조 【판매품목】

- ① 함양군이 행할 영업의 종류는 농·수·축 특산물 판매업으로 하며, 판매품목은 함양군에서 생산된 농·수·축 특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다.
- ② 함양군 이외 지역의 생산품, 공산품, 예철 알콜을 1%이상 함유하고 있는

주류, 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 등은 판매할 수 없다.

③ 모든 판매품목은 함양군의 품질 검증을 받은 제품으로 생산자, 판매가격 등을 표시하여야하며 식품위생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5 조 【운영에 관한 사항】

① 함양군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우수 생산자를 선정하여 값싸고 우수한 농산물이 직거래되도록 하여야한다.

② 함양군은 직거래장터에 참여하는 생산자, 판매품목,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.

③ 함양군은 직거래장터의 농산물 판매가격을 시중 도매가격과 동일하거나 그 이하로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한국도로공사는 농산물의 판매가격이 시중보다 비싸거나 무허가, 저질상품 등 이용고객에게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조정 및 판매중지(금지)를 요구할 수 있고, 함양군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⑤ 함양군은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매출실적을 한국도로공사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매월 또는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6 조 【협약의 해지 등】

① 한국도로공사는 본 협약에 따른 함양군의 제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합리적인 시정을 요구하거나 판매중지(금지)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해당 지자체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한국도로공사는 함양군의 시정요구 불이행, 미승인 물품판매,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본 협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는 이에 응하고 즉시 시설물 철거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7 조 【기타 제의무】

① 함양군은 영업상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함양군은 본 협약기간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한국도로공사와

사전협의를 거쳐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함양군은 본 협약에 의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청결하게 주위 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,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에 임하여 이용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.

④ 함양군은 판매하는 제품을 청결하게 진열·판매하여야 하며 제품의 변질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관리에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.

⑤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 직거래장터의 시설물과 비품 등은 모두 철거하여야 하며, 발생하는 쓰레기(폐기물)는 함양군이 당일에 수거하여야 한다.

⑥ 기타 한국도로공사의 승인 없이 현수막, 가판대 등을 설치할 수 없다.

제 8 조 【실태점검 등】

① 한국도로공사는 단독 또는 함양군과 합동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함양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전항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는 즉시 시정하여야 하며, 미이행시 사안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 9 조 【기 타】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와 함양군의 상호협약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한국도로공사의 해석에 따른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작성하고 각기 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.

2023년 4월 28일

“한국도로공사” 주 소 :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

성 명 :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김 남 열 (인)



“함양군” 주 소 :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

성 명 : 함양군수 진 병 영 (인)

